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악취정밀조사의 실시 근거 마련 등 〉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80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악취방지종합시책의 수립 주기 단축 및 악취정밀조사 근거 마련	3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근거 마련 등	12
※ 참고자료	20
1.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개념도	20
2.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별표3])	21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23
4.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2024.6)	25

I. 제안경위

2024년 7월 8일 송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시책 수립 시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라. 악취실태조사·악취정밀조사와 악취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보고·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벌칙을 마련함(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악취방지종합시책의 수립 주기 단축 및 악취정밀조사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현행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u>관할구역</u> 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u>제1항의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관할구역</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	④ ----- -----5

현행	개정안
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년-----하며,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악취정밀조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정밀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

현행	개정안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 ⑤ (생략) ⑥ <u>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u>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u>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정밀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④ <u>그 밖에 악취정밀조사에 필요한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3조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악취방지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악취 배출 환경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② 수립된 시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시의적절한 악취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악취방지종합시책은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뿐만 아니라 악취 판정 전문인력 양성, 악취확산 모델링 기법 표준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추진

1)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 또한 포함하고 있음²⁾을 고려할 때,

종합시책의 수립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유지하되, 종합시책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 주요 추진과제]

분야	주요 추진과제
I.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1. 사업장 설치단계부터 악취영향 최소화 2.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치
II.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1.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축산 악취피해 저감 2. 하수도 악취 실태분석 및 종합적 악취관리체계 마련 3.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 최소화
III.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1. 수용체 중심의 악취 평가체계 도입 2. 최신기술을 활용한 악취 감시기법 도입
IV.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1.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 활성화 2. 투명한 악취민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자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2018.12., 환경부

2) (참고자료 1)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개념도

참고로,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야하는 국가계획인 「대기환경보전법」³⁾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환경보건법」⁴⁾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물환경보전법」⁵⁾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의 경우에도 10년 단위의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둘째, 안 제4조의2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위탁·대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서의 정밀조사를 통해 악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4조6)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악취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악취실태조사 실시 현황(2018~2024)]

연도	악취실태조사 신청 및 선정 결과	
	지방자치단체 신청 지역 개소수	선정지역 개소수
2018	시범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음	3
2019		3
2020	54개	4
2021	65개	4
2022	85개	6
2023	45개	6
2024	37개	6 (실시중)

자료:환경부

6) 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악취정밀조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현행법 제6조⁷⁾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과의 차이점이 크지 아니하고, 현행 악취실태조사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 등 조사의 실질⁸⁾ 또한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악취실태조사와 악취정밀조사 요건 비교]

	악취실태조사	악취정밀조사(안)
근거	법 제4조	개정안 제4조의2
요건	①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무)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②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재량)	①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②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조사기관	한국환경공단, 악취검사기관 등 위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위탁·대행
조사내용	환경부령 위임 - 기초조사: 악취민원,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기상자료 등 - 조사항목: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기상요소 등 - 조사기간·지점: 대기질(반기 1회 이상, 4개지점 이상), 악취배출사업장 악취 측정(연 1회 이상, 악취 배출구 또는 부지 경계)	환경부령 위임

7) 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8) (참고자료 2)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동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을 때,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연구·용역 관련 1억 5,000만원, 악취정밀조사(20개소/년) 관련 매년 36억원씩 등 총 18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안 제3조제4항)	150	-	-	-	-	150	30
악취정밀조사 실시 (안 제4조의2 신설)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3,600
추가재정소요	3,750	3,600	3,600	3,600	3,600	18,150	3,630

- 주 1.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국비임
 2.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과 악취정밀조사 실시 지역의 개소수 및 악취정밀조사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악취실태조사·악취정밀조사 또는 보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개선명령)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0조(개선명령)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나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2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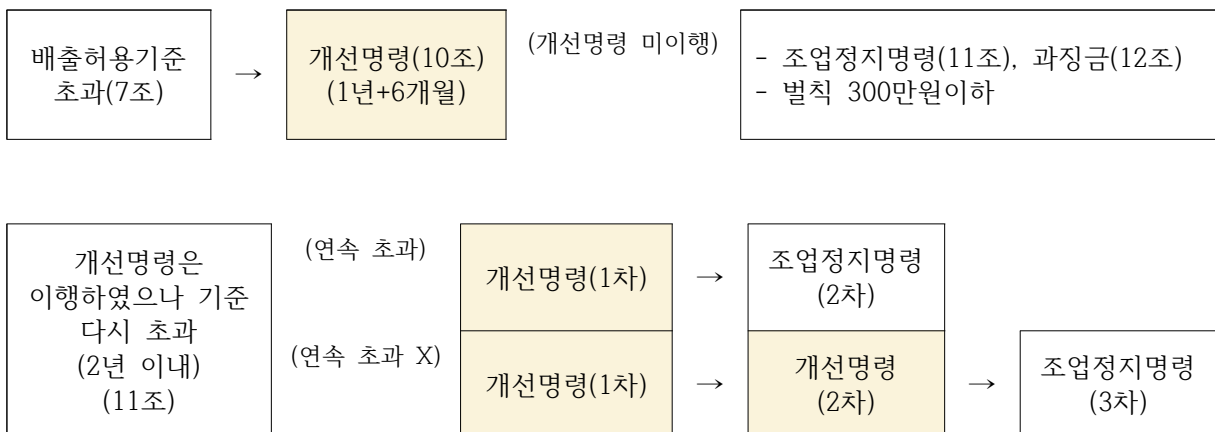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 구청장은 제4조의 악취실태 조사·제4조의2의 악취정밀조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조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기로 한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

현행	개정안
	<u>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u> ④ <u>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등의 제거·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u> ⑤ <u>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u>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등의 제거·변경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첫째, 안 제10조제3항은 배출허용기준⁹⁾을 초과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이행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이행 상태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배출허용기준 초과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



자료: 환경부

9) (참고자료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다만, 현행법 시행령 제7조¹⁰⁾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받은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악취실태조사(제4조)·악취정밀조사(안 제4조의2) 또는 보고·검사(제17조)¹¹⁾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등의 제거·변경을 방해 또

10) **시행령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 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11) 「**악취방지법**」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는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악취 관련 조사 현장에서의 민원을 방지¹²⁾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안 제24조의2제4항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의 출입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 또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¹³⁾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은 명확한 거부 사유를 법문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정당한 사유로서 토지의 소유자등이 출입 등을 거부할 수 있고, 벌칙 등의 조항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용어임¹⁴⁾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

12)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실태조사 당시 사업자 소유의 토지 출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

1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4) 「식물방역법」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개정안의 출입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¹⁵⁾는 농장 소유주의 동의 없이 관계 공무원 및 조사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독감(AI) 등 가축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사전통지·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악취실태조사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므로, 과도한 규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참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¹⁶⁾, 「습지보전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공향시설법」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2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15) 한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법」 17) 또한 가축분뇨실태조사, 습지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방해한 자

17) 「습지보전법」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참고자료

1.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개념도(자료: 환경부)



2.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1. 조사기관 선정

- 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
- 나.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악취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 다.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

2. 조사지역 기초조사

- 가. 조사지역의 악취민원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 조사
- 나. 해당지역의 기상자료, 중점사업장, 다량 배출사업장 현황 등 조사

3. 조사기간(주기) 선정

가. 대기질

- 1) 조사대상 지역의 민원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
- 2) 2일 이상 측정, 1일 측정시 날씨는 조정 가능하며, 새벽 1회(6~9시), 주간 1회(11~17시), 야간 1회(19~22시) 이상 측정
 - ※ 기상, 인력 등의 여건 등에 따라 날씨는 조정 가능하며, 총 회수는 반기 당 6회(새벽 6~9시 2회, 주간 11~17시 2회, 야간 18~22시 2회) 이상
- 3) 기온, 풍향, 날씨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악취특성을 대표하고 안정적인 기간을 악취조사기간으로 설정

나. 악취배출사업장

- 1) 배출구 또는 경계지역에서 사업장 당 연 1회 이상 측정, 사업장 배출구가 다수인 경우 주요 악취배출원 위주로 선정(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 2)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이 20개 이하인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20개 이상인 경우 중점 사업장, 다량 배출사업장 등 선정(최소 20개 이상)

4. 조사지점 선정

가. 대기질

- 1) 악취관리지역 내(4개 지점 이상): 악취관리지역을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하여 각 구역 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특정(사업장 단위)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주요 악취발생원과 배출구를 선정
- 2) 경계지역 지역(2개 지점 이상):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 3) 인근 영향(피해)지역(4개 지점 이상): 악취관리지역의 주변지역을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하여 각 구역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악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

나. 악취배출사업장

- 1) 배출구: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있는 경우
- 2) 부지경계: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할 수 있고,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가 없는 경우 부지경계에서 채취

5. 조사항목

가. 대기질 조사: 복합악취 측정과 대상지역에서 발생(예상)되는 주요 지정악취물질을 필요시 측정하되, 지정악취물질의 발생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전 항목 측정

- 1) 복합악취
- 2) 지정악취물질(필요시 전 항목 또는 발생 예상 항목)
- 3) 기상요소 조사(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일사량 등)

나. 악취배출사업장 조사: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 측정

- 1) 복합악취(부지경계 또는 배출구)
- 2) 지정악취물질(필요시 전 항목 또는 발생 예상 항목)
- 3) 기상요소 조사(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일사량 등)
- 4) 배출구 시료 채취 시 유속, 직경, 높이, 온도 조사(모델링 등에 활용)

※ 본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회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회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부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부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부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부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4.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2024.6) (자료: 환경부)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1	울산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20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2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3			2009-09-0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산405-3	10천㎡	
4		2014-02-0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11개필지)	20천㎡		
5	경기	평택시	2005-05-16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송지구		5,681천㎡
6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시	16,443천㎡
		안산시			안산시	4,424천㎡
7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8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천㎡
9			오산시	2011-0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460천㎡
10		화성시	2016-12-05	발안산업단지		1,268천㎡
11		평택시	2018-02-13	평택일반산업단지(세교)		535천㎡
12		평택시	2023-08-23	독곡동 일원 4필지(축사2개소)		8,474㎡
13		용인시	2018-06-04	포곡읍 신원리, 유운리 일원(축사 47, 레스피아)		247천㎡
14	충남	서산시	2006-1-20 (2020-7-6 통합)	－ 대산공업단지(3곳) － 대산일반산업단지 － 대산3일반산업단지 － 대죽일반산업단지 －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 대죽자원비축국가산업단지 －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 씨지앤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 － 독곶리 1 외 － 대죽리 10-1 외		17,052천㎡
15		당진시	20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2,776천㎡
16				송산일반산업단지		5,539천㎡
17		보령시	2024-03-26	연지리 342-8 외 11필지, 연지리 342-4 외 1필지, 연지리 348 외 4필지		49,062㎡
18	인천	남동구	2006-01-24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동·고잔동 지역		10,545천㎡
19		서구		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20				가좌동·석남동·원창동 지역		9,171천㎡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21				백석·오류동 일원	15,507천㎡
22			2012-10-02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천㎡
23		동구	2011-12-13	화수동 일원	273천㎡
24			2012-10-02	송현동 일원	329천㎡
25		부평구	2015-08-24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906천㎡
26		중구	2016-12-12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	638천㎡
27		미추홀구	2018-11-05	인천지방산업단지(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577천㎡
28			2018-11-05	인천기계산업단지(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245천㎡
29	부산	사하구	2006-04-26	부산피혁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	15천㎡
30	전북	완주군	20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천㎡
31		익산시	2014-01-24	익산제1산업단지	1,334천㎡
32				익산제2산업단지	3,309천㎡
33		진안군	2024-05-03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05천㎡
34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18천㎡
35		대덕구	2008-01-01	대전 1,2산업단지 등	2,038천㎡
36	대전			대전 3,4산업단지 등	3,491천㎡
37	강원	영월군	2008-04-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7개필지)	102천㎡
38		원주시	2024-04-09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39		철원군	2024-04-09	철원군 동송읍 오지1리 및 장흥리 일원	216,518㎡
40	경북	의성군	2008-12-0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천㎡
41		경주시	2022-05-12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40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2168천㎡
42	경남	창원시	2013-07-01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17,242천㎡
43		김해시	2020-02-17	주촌면 선지리 214 외 26필지	28천㎡
44				주촌면 원지리 116 외 39필지	44천㎡
45			2020-10-13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부	758천㎡
46			2021-07-09	진영·본산리준공업지역	1,001천㎡
47		함안군	2021-01-01	칠서일반산업단지	3,067천㎡
48			2023-05-08	함안면 괴산리 673번지 외 57필지(양돈시설)	74.8천㎡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11개소)	
49	전남	여수시	20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96천㎡
50		여수시	2019-05-02	여수국가산업단지	32,550천㎡
51		여수시	2019-05-02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4,156천㎡
52	제주	제주시	2018-03-23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노형동 등(축사 53)	496천㎡
53		서귀포시	2018-03-23	대정읍, 남원읍, 중문동 등(축사 6)	65천㎡
54		서귀포시	2019-07-19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지역 44개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	353천㎡
55	대구	서구	2024-06-01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849천㎡

자료: 환경부